

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현황

□ 사업근거

-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- 「2011 장애인복지 종합시책」(행정1부시장방침, 2011.5.20)
- 「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」(시장방침, 2011.11.3.)

□ 추진경위

- '06.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
- '07.05월 장애인활동보조 국가사업 전국 시행
- '07.0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
- '11.07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확대 시행
- '11.10월 장애인활동보조 →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·확대
- '13.01월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(장애1급 → 장애1~2급)
- '13.07월 장애아동 지원시간 확대(80→100시간) 및 1급탈락자 신규지원(40시간)
- '14.03월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(180→200시간)
- '15.02월 서울시 자체 24시간 지원 시행(100명)
- '15.06월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(장애1~2급 → 1~3급)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장애1~3급 중증장애인(소득기준 없음, 만 6세~65세미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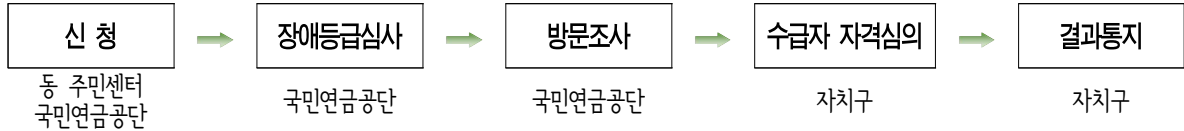
- 국고보조사업 : 1~3급 장애인으로서 '인정조사표'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
- 시비추가사업 :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국고지원 탈락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220점 미만인 자, 시설 퇴소자

○ 대상인원 : 월14,289여명(국비 12,370명, 시비추가 1,919명)

(단위 : 명)

구분	2011	2012	2013	2014	2015
국고 보조	7,538	11,920	10,435	11,600	12,370
시비 추가	1,557	1,917	2,295	1,854	1,919

○ 대상자 선정절차



※ 방문조사 :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등 조사

○ 지원급여 : 등급에 따라 월 48시간~742시간(국고48~392, 시비40~350)

- 기본급여 :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
- 추가급여 :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
- 서울시 추가급여 :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~220점 미만인 자, 시설퇴소 장애인

기본급여(국고보조)		
구분	지원등급	월 급여액(시간)
성인 · 아동 (장애 1~3급)	1등급 (380점 ~ 470점)	1,040천원 (118시간)
	2등급 (320점 ~ 379점)	828천원 (94시간)
	3등급 (260점 ~ 319점)	625천원 (71시간)
	4등급 (220점 ~ 259점)	423천원 (48시간)

추가급여(국고보조)	
지원분류	월 급여액(시간)
① 최중증(400점 이상) 독거가구	2,414 (274시간)
② 중증(380~399점) 독거가구	705 (80시간)
③ 기타(380점 미만)독거가구	176 (20시간)
④ 최중증(400점 이상) 취약가구	2,414 (274시간)
⑤ 중증(380~399점) 취약가구	705 (80시간)
⑥ 기타(380점 이하) 취약가구	176 (20시간)
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(6개월)	705 (80시간)
⑧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(6개월)	176 (20시간)
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	88 (10시간)
⑩ 직장에 다니는 경우	352 (40시간)
⑪ 가족(실질적 보호자) 등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	176 (20시간)
⑫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, 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	634 (72시간)

서울시 추가급여	
지원분류	월 급여액(시간)
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로 24시간지원 선정자	3,084천원 (350시간)
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1인가구	1,762천원 (200시간)
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와상 사지마비 1인 가구	1,057천원 (120시간)
장애1급 중 와상 사지마비 국비1등급	881천원 (100시간)
장애1급 (인정점수 200점 ~ 220점)	352천원 (40시간)
시설퇴소자 (적격자 심의선발)	264천원 (30시간)

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~2급 장애인,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

○ 서비스내용

- 활동보조 :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이동보조 등
- 방문목욕 :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
- 방문간호 : 간호, 요양에 관한 상담, 구강위생서비스 등

○ 서비스 단가 : 급여이용 종류에 따라 별도 부과

- 활동보조 : 시간당 8,810원(야간, 공휴일 13,210원)
※ '14년 단가 8,550(야간 12,830원)
- 방문목욕 : 1회 목욕시 65,410원 ~ 72,540원
- 방문간호 : 1회 방문당 31,760~47,940원

○ 본인부담금

- 국고보조 : 등급 및 소득수준별 차등부과(기초수급자 무료, 차상위자 정액)
. 기본급여액의 6~15%(25천원~95천원) + 추가급여액의 2~5%(2천원~117천원)
- 시비추가지원 : 없음

○ 지원방법 :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(바우처제공)

-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: 108개소(장애인단체 10, 장애인복지관 29, IL센터 39, 지역사회활센터 15, 노인장기요양기관 2, 사회복지관 4, 기타 9)
- 방문목욕 : 20개소, 방문간호 : 19개소
-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: 8개소

○ '15년 사업비 : 148,965백만원

- 국고보조사업 : 125,685백만원
* 국비 73,500백만원(50%), 시비 52,185백만원(34.5%)
- 시비추가사업 : 23,280백만원(시비 100%)

□ '14년 추진실적

- '14년 누적 이용인원은 156,276명('14.12월말 현재)
 - 국고보조 : 133,128명, 시비추가 : 23,148명
 - 월 평균 이용인원 : 13,023명

<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인원 및 예산내역 >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 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지원인원(누계)	76,788	96,088	105,780	124,432	140,579	156,276
예산내역	48,911	57,333	71,956	96,274	116,943	138,842

□ '15년 추진실적 (7월31현재)

- '15년 누적 이용인원은 95,654명
 - 국고보조 : 81,923명, 시비추가 : 13,731명
 - 월 평균 이용인원 : 13,665명
- 활동지원 24시간 지원(100명) : '15.2월
 -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선정(85명) - 1월
 -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선정(15명) - 2월